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하라!

<휴게실 실태 현장 증언 및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12월 15일(수)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관 : 민주노총

<진행 순서>

- 인사말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태의
- 사회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담당 조진영
- 현장 증언
 - 콜센터 노동자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지부 지부장 조지훈
 - 건설 노동자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건설노조 서울건설지부 서북지대 청년위원 김상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조직부장 한건희
- 요구안 발제 : 휴게시설 설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대한 민주노총 요구안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자 일동

휴게실 실태 현장 증언 및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자료

■ 현장증언

콜센터 노동자	3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지부 지부장 조지훈	
건설 노동자	5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건설노조 서울건설지부 서북지대 청년위원 김상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17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조직부장 한건희	

■ 민주노총 요구안

휴게시설 설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대한 민주노총 요구안	26
--	----

■ 기자회견문

.....	33
-------	----

안녕하세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지부 조지훈 지부장입니다.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에는 현재 휴게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는 센터가 서울 을지와 양평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겪기 전에 일했던 곳인 구로 콜센터에는 휴게시설이 있었지만, 양평으로 이사하면서 휴게실이 없어졌습니다. 서울 을지센터의 경우 하청업체가 바뀌기 전에는 휴게시설이 있었지만, 지금은 휴게시설이 사라졌습니다.

휴게시설이 없어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상담원들은 출근해서 자기 자리에서 업무를 하다가, 자기 자리에서 도시락 먹고, 힘들면 점심 먹고 남은 시간에 자기 자리에서 잠깐 엎드려서 쉬다가 퇴근하는 게 하루 노동 일과의 전부입니다. 조합원 설문조사를 하면 휴게시설을 만들고, 휴게시간을 확보해 달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닫힌 공간 때문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뿐 아니라 대부분의 간접고용 콜센터는 휴게시설이 없습니다. 원청은 비용을 줄이려 하고, 하청은 중간착취 수수료를 높이려 하는 자본들의 이해관계가 맞으면서 상담원들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휴게시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화가 나는 부분은 정부와 회사에서는 콜센터 노동자들을 오직 감염 매개체로만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센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방문했는데요. 장관은 점심은 외부에서 먹냐고 물어보고, 회사는 각자 자리에서 먹고 있다고 답변한 게 대화의 끝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씬 없이 상담하는 상담원의 노동환경을 안다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작업공간 확대와 안전한 휴게시설 확보를 당연히 얘기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인식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장관이 방문할 때 센터에서는 평소처럼 각자 자리에서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장관이 방문한다고 음식 냄새를 없애기 위해 사무실의 모든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는 바람에 춥다고 하소연하는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에서 무상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제안을 회사에 했지만 회사에서는 설치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고작 공기청정기 한 대 놓

을 공간도 없는 센터를 만들어 놓고는, 밥 냄새 빼라고 호들갑 떨게 만들고, 그러면서 노동자의 접촉을 통제하려는 것은, 모든 원인과 책임을 오직 노동자에게만 지우려는 아주 기이한 행태입니다.

코로나로 사무실이 좁아지면서 회사의 운영비가 줄어들 것을 예상하면, 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꼭 손해를 보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간접고용 콜센터는 대부분 휴게시설이 없거나 막혀있기 때문에 휴게시설 하위법령에서 1인당 단위면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1인당 단위면적이 없다면 회사는 수백명 콜센터 노동자가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좁은, 최소면적만을 간신히 지킨 아주 작은 휴게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마저도 감염 위험이 있다며 이용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대부분의 콜센터는 사외하청입니다. 사외하청 휴게시설의 설치 역시 도급인의 의무인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법령이 사실상 제한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청 콜센터의 안전보건 환경은 결국 원청이 얼마만큼 책임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역시 2020년 2월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전에, 원청이 상담원 작업공간 면적을 늘리고, 안전한 휴게시설을 마련해 놨다면 이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았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지부는 지난 9월 원청과 ‘쾌적하고 충분한 업무공간 확대 및 휴게공간 확보’에 대한 노사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합의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은 코로나 때문에 휴게시설 설치하는 불가하고, 비용 문제로 작업공간 확대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휴게시설 하위법령에 사외하청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콜센터에서 휴게시설 법령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콜센터 노동자는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린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코로나 종식은 그 시기가 언제일지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언제까지 자기 자리에서 밥 먹고, 한겨울에 밥 냄새 빼라고 창문 열고, 휴게시설은 아예 이용할 수 없고, 사적 영역까지 침해당하는 병균 취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속에서 안전한 노동환경을 갖춘 콜센터를 어떻게 만들지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콜센터 노동자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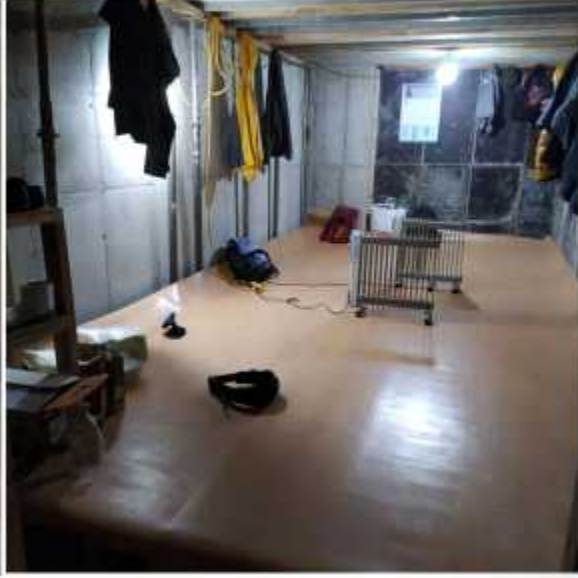
건설현장 휴게시설 실태

건설노조 서울건설지부 서북지대 청년위원 김상윤

예전, 정말이지 열악했던 건설현장의
휴게시설, 탈의실(이 아닌 내 차에서 옷 갈아입기)



신내동 씨티건설-원일이엔지현장
배정된 컨테이너가 없어서, 현장 안에 직접 거꾸집으로 휴게실 만들.



원청에 요청했으나
타설 뒤 휴게시설 설치 예정



올해, 2021년 7월 29일 폭염기, 서울 은평구 수색동 현장



올해, 2021년 7월 29일 폭염기, 서울 은평구 수색동 현장
휴게실 바로 옆이 자재야적장, 쉴 곳이 부족하여 합판을 깔고 쉬는 건설노동자



배수되지 않는 바닥, 고정되지 않는 계단, 사람 대신 자재가 차지한 쉼터.
임의로 대신하는 휴게실, 쓰레기에 말도 못 하는 악취.



배수되지 않는 바닥, 고정되지 않는 계단, 사람 대신 자재가 차지한 쉼터.
임의로 대신하는 휴게실, 쓰레기에 말도 못 하는 악취.



하루에 150에서 200명이 일하는 현장에 소변 화장실조차 전무.
계단엔 오줌 냄새로 악취가 진동함. 당연하게도(?) 여성 화장실은 없음.





노동자가 쉬어야 할 휴게시설에 자재가 쉬고 있음



2021년 7월 28일 윤미향 의원 흑석동 현장 방문



잠깐 사이 땀에 젖은 윤미향 의원



잠깐 사이 역시, 땀에 젖은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기후위기 영향으로 열악해진 휴게시설

- 심각한 기후위기인 호한, 폭설, 폭염, 미세먼지로 인하여 대표적인 옥외산업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하고 있음.
- 2021년 폭염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건설노조는 2021년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형틀목수, 철근, 타설 등 현장의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음.

실 때는
그늘진 곳에서,
햇볕이 완전 차단된 곳에서
쉽니까?

	명	퍼센트
햇볕이 완전 차단된 곳에서 쉰다	487	33.5%
아무데서나 쉰다	966	66.5%

온전한 휴게실 에서
(냉난방기 설치 등)
쉬는 때는 어느 정도 되나요?

	명	퍼센트
없다	763	52.5%
휴게실이 멀어 가기 힘들	338	23.3%
가끔 휴게실에서 쉰다	293	20.2%
대부분 휴게실에서 쉰다	59	4.1%

작업공간 가까운 곳에 (100미터 이내) 간이 그늘막이 설치돼 있습니까?

냉난방 시설을 갖춘 컨테이너 휴게실도 아니고...

	명	퍼센트
설치돼 있다	793	54.6%
없다	660	45.4%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쓸 만한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까?

출력인원 대비 너무나 부족한 휴게공간...

	명	퍼센트
마련돼 있다	137	9.4%
있긴 한데 부족하다	842	57.9%
없다	474	32.6%

건설노동자의 요구

- 실효성 있는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보장 강화!
- 휴게시간 보장, 휴게시설 확충, 생수와 제빙기에 대한 접근 확대!
- 타워크레인 비롯한 건설기계 노동자들에 대한 폭염대책 필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의 필요성!
- 노동시간 단축, 작업중지권 보장과 임금보전 대책 마련!

민간위탁 폐기물수집운반 노동자 휴게, 샤워시설 실태

청주시, 전주시, 제천시, 보은군

관련 규정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발주기관은 용역근로자 이용할 수 있는 위생시설(휴게실, 세면 및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 설치 또는 제공” 하도록 규정함.
- 각 지자체는 폐기물수집운반 대행 과업지시서 등을 통해 용역 업체가 휴게실 및 샤워실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대부분의 민간 대행 업체들이 휴게실 및 샤워실을 갖추고 있음.

관련 규정

- 청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과업지시서

: 제6조의 ⑦ "대행업체" 는 샤워장, 휴게시설 등 근로자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과업지시서

: 제14조의 ⑨ 목욕시설, 휴게시설 등 근로자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용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천시 OO환경 휴게실



제천시 OO환경 샤워실



보은군 OO환경 샤워실



보은군 □□환경 샤워실



청주시 @@환경 샤워실



청주시 ☆☆환경 휴게실



청주시 ☆☆환경 샤워실



청주시 ○○환경 휴게실



청주시 ◇◇환경 샤워실



전주시 ○○환경 샤워실



현황

- 휴게실은 열악하나마 대기 공간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 샤워실은 거의 활용되고 있지 못함.
- 청주시 14개 수집운반 대행 업체 중 휴게실을 활용한다는 업체는 5~6곳, 샤워실을 활용한다는 업체는 1~2곳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개선방안

- 샤워실 설비 자체가 열악하여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환기시설 미설치, 온수기 미설치 등)
- 샤워실 설비가 비교적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도 업체별 문화에 따라 샤워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

개선방안

- 샤워실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업체 노동자수에 비례한 샤워전 설치, 습기가 빠질 수 있는 적절한 환기시설 설치, 안정적인 온수기 설치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
-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탈의 공간 및 의료 보관함 설치, 작업복 공동세탁 담당 지정 등 작업문화 개선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청주시 샤워시설 비교



▲청주시 민간위탁 사업장 샤워실(좌), 직접운영 샤워실(우)

- 출처 : 외주화된 노동에서 노동자시민의 위험 연구 (사회공공연구원) 中

청주시 탈의실 비교



▲청주시 민간위탁 사업장 탈의실(좌), 직접운영 탈의실(우)

- 출처 : 외주화된 노동에서 노동자시민의 위험 연구 (사회공공연구원) 中

휴게시설 설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대한 민주노총 요구안

1. 민주노총 요구안 개요

- 휴게시설 설치 전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1인 이상, 1억 이상 건설공사)
-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근로자 대표, 하청 노동자 포함)과 합의 시행하도록 한다.
- 사업장 면적이 작거나, 이동 노동자, 사업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용휴게실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 휴게실 최소면적은 9㎡로 하고, 1인당 단위면적은 2㎡ 이상으로 하되,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면적과 개소를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정한다.
- 휴게실은 작업 장소와 100미터 이내에 작업 장소와 분리하여 설치한다.
- 휴게실은 성별을 분리하여 각각 설치하고, 관계수급인의 소속 노동자 휴게실은 별도로 설치하되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지하, 창고, 옥상이나 계단 밑, 소음이나 분진발생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온도, 습도, 소음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냉난방, 환기시설을 설치한다.
- 사용인원에 비례한 적정한 의자, 탁자, 음용수 등을 비치하고 관리한다.
-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청소, 소독 등을 실시하며 개선요구절차를 마련한다.
- 건설업의 휴게시설 설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을 정부 기금으로 지원한다.
- 특수고용, 이동 노동자, 영세사업장의 휴게실 설치를 위한 관련 법 개정과 예산을 마련한다.
- 장애인노동자의 쉼 권리 보장을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2. 휴게시설 설치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 사업의 종류

①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다만, 각호의 사업장은 공용휴게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리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가. 배달, 운송, 설치 수리 등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는 사업

나. 사업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임차인이 휴게시설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다. 사업장 면적이 관리기준의 1인당 단위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

③ 2항의 공용휴게시설 이용도 불가능한 근로자에게는 휴게시설 이용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의 사업장에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사용하는 휴게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① 상시 근로자 수는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1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 사업장. 1억 이상 건설공사

③ 다만, 사업장 면적이 휴게시설의 최소기준 미만인 사업장으로 공용휴게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용휴게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리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 노동자들이 휴식권 보장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의 건강권의 문제이자 기본 인권의 문제로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휴게시설의 설치 기준을 차등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사회적으로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
-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는 산안법 39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었고, 통칙 조항으로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치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있는 조항임. 동 규정에 이미 분진 발산 장소나 유해물질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개정 산안법 128조의 2 휴게시설 설치가 도입되었고, 해당하는 사업장과 설치 관리기준을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하고 있음.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79조에 있는 내용을 개정 산안법 128조의 2에서 적용대상을 상시 근로자 00인 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의 충돌이 발생하게 됨
- 고용 규모에 따른 차등적 적용은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음. 특히, 사무직, 서비스직, 플랜트와 같은 장치 산업, 기계 제작 조립 등의 경우 고용인원과 매출액, 사업장 면적과는 연관성이 매우 낮음.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설치 기준 준수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매출이나 이익 규모도 크고, 사업장 면적도 충분히 확보되면서도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전면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고용규모나 업종과 무관하게 전면 적용하도록 하면서, 이동노동이나 장소임대 사업장의 경우 등과 같이 제한적으로 일부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한 보완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이동 노동자. 장소 임대 사업장 등의 휴게시설

- 작업 장소가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는 운송 (배달, 운전, 화물운송), 점검이나 검침, 가전제품 등의 설치 수리, 학습지 교사나 방문 판매 등 다양한 직종이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정부, 지자체가 특수고용 노동자 특례로 휴게시설 설치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었으나, 이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산안법에 이동 노동을 하는 사업주 의무가 명시되어야 함.
- 이동노동을 하는 경우에도 본사 및 주요 거점장소에는 사업주가 휴게실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공공휴게시설 이용에 대해 사업주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협약이 맺어져 있고, 일정한 비율의 이용료 부담을 하도록 하고, 관리기준에 따른 의무도 공동으로 부여되어야 함.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도록 해야 이동노동에 대한 공공휴게시설 이용이 실질화 될 수 있음.
- 장소 임대 사업장의 경우나, 아파트형 공장처럼 사업장 면적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공동휴게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용과 관리의 공동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다만, 임대 사업장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독자적인 휴게실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이거나, 사업장 면적이 작은 경우의 공동 휴게실도 독자적인 휴게실 설치가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장 인근의 휴게 공간 (카페 등)을 확보하여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지원, 사용계약을 하면 의무를 준수하는 것으로 보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이는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 하고, 휴게시설의 최소 면적이나 1인당 면적 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며, 공동휴게실 설치도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

○ 하청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

- 하청 노동자의 휴게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청 노동자가 사용하는 휴게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 하청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와 관리에 대해서는 하청 노동자의 노동자 대표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함.
- 하청 노동자의 휴게시설이 원청 노동자와 설치, 면적, 비품등에 있어 차별적으로 제공 운영되지 않도록 명시하여야 함.
- 하청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원청에 부여되었음. 이는 원청의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콜센터 등과 같이 하청 노동자 사업장이 원청과 별도의 장소에 있는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명

확한 규정이 필요함.

- 콜센터 등과 같이 사외하청의 경우 도급계약에 운영비, 임대료 등의 일반관리비가 계약내용에 명시되어 있음. 이에 원청이 설치의무의 이행방안 중의 하나로 도급계약에 설치, 운영 및 관리 비용을 반영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

3. 크기, 위치, 온도 및 조명 등 설치 관리 기준

시행규칙(안)

제194조의2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① 사업주가 제 128조의2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별표 27에서 정하는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휴게시설의 위치, 개수, 관리기준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야 한다.
- ③ 도급인의 사업장에 설치하는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사용하는 휴게실은 도급인의 근로자와 설치 관리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

○ 휴게시설 설치, 운영, 관리에서 노동조합과 합의 시행 원칙 명확히 규정

- 사업장의 다양한 조건에서 휴게시설 설치의 법적 이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요구에 맞는 설치와 관리가 명확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임.
- 노동자들이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휴게실을 사업주의 설치의무 이행과 노동부의 감독 편의대로만 진행된다면 법 제정의 의미가 없음.
- 휴게시설의 설치 개소, 장소, 운영, 비품, 관리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시행하도록 명시해야 함. 하청 노동자 이용하는 휴게시설에 대해서는 하청 근로자 대표와 합의 시행하도록 명시해야 함.

① 설치 기준

- 휴게실의 최소 전체 면적은 9㎡가 되어야 하고, 층고는 2.1㎡가 되어야 한다.
- 1인당 단위면적은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휴게실의 면적 기준에는 작업도구, 비품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 다만,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동시 사용 인원을 고려하여 단위면적과 개소를 정할 수 있다.
- 휴게실은 작업공간과 분리되어 설치한다.
- 휴게 시간 내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공간과 100미터 이내 장소에 설치하고, 각 층별로 설치한다.
- 성별로 휴게실을 분리하여 설치한다.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사용하는 휴게실은 별도로 설치되,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지하, 창고, 옥상이나 계단 밑, 소음이나 분진발생 장소에는 설치 할 수 없다

- 휴게실은 화장실, 세척실, 수면실, 탈의실, 수유시설 등과는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 휴게시설은 내화성이 있는 재료로 설치되어야 하고 스프링 쿨러, 소화기 등이 비치되어야 한다.
- 장애인노동자의 쉼 권리 보장을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② 온도, 조명, 비품 등

- 휴게실의 적정온도는 여름 20~28℃, 겨울 18~22℃를 유지하고, 습도 50~55%를 유지하도록 명시
- 휴게시설 내 소음 허용기준은 50dB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
- 휴게시설 내 조명은 100~200 Lux로 유지하도록 함.
- 휴게시설 내 사용 인원에 비례한 의자, 탁자, 화장지, 음용수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 휴게시설에 냉방기, 난방기, 환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③ 관리기준

- 휴게시설이라는 표지를 부착하고,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휴게시설에 설치된 설비 및 비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 휴게시설의 정기적인 청소, 소독, 비품관리를 하고 정기점검 실태를 부착하고, 관리실태에 대한 노동자들의 개선요구 청취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휴게실에 작업도구, 물품 등 노동자의 휴식에 방해되는 물품이 적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1인당 면적 기준, 동시 사용 인원을 고려한 적정한 면적과 개소 규정

- 휴게실의 최소 전체 면적은 9㎡가 되어야 함.
- 휴게시설의 최소면적 기준뿐 아니라 1인당 면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함.
- 사업장 실태조사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휴게실 면적임. 1인당 면적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휴게시설 법제화가 추진된 취지 자체가 반영되지 않는 것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한 면적과 개소 설치도 기준제시가 반드시 필요함.
- 1인당 면적기준에서 상시근로자가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임을 명시함.
- 1인당 면적 기준에서는 휴게실에 구비되어 있는 사물함, 비품 등의 면적은 제외하는 기준임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
- 근 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 야간 경비 등 수면시간이 있는 작업등 일부 작업은 누워서 쉴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기본적으로는 수면시설과 휴게시설은 분리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야간 경비 등과 같은 경우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인접거리에 설치되도록 명시함.
- 사무직 노동자는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고,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 특성으로 별도의 휴게실 설치가 필요함. 협소한 개인 작업공간은 휴식권을 보장할 수 없음.

○ 교도소 1인당 수용거실 면적 2㎡ 미달은 위법으로 국가가 배상 판결

-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 “일정 규모 이하 면적의 구치소 거실에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 으로 결정
-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은 판결
-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중략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2㎡에 미달할 경우 이는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

○ 2014 서울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에서는 1인당 5㎡ 내외의 적정규모 공간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서울시 교육청 학교급식 노동자 휴게실 실태조사 1,361개 학교 휴게실 실태조사 1인당 면적 기준 평균 2.4㎡. 평균 이하 학교 다수

2) 휴게실 설치 장소

- 가이드 라인에 명시되었던 작업 장소 100미터 이내, 층별 설치 등이 관리기준에 명시되어야 함.
- 옥외 작업의 경우에도 휴게실 설치를 원칙으로 명시되어야 함. 건설업의 경우에도 휴게실 설치가 충분히 가능함. 단기간의 공사 등 일정 기준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천막이나 그늘막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옥외 작업의 경우 휴게실 외에 추가로 설치된 천막, 그늘막 등 휴게시설이라 하더라도 온도, 습도, 조명, 환기, 소음 및 휴게시설 관리 조항이 적용되어야 함.
- 하청 노동자가 사용하는 휴게실은 별도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설치와 관리기준은 사업장이 동일한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함.
- 성별에 따라 휴게실을 별도 설치 되어야 함.
- 지하나 창고, 옥상이나 계단 밑, 소음이 심한 장소 등에 휴게실 설치 금지를 명시
- 휴게실은 화장실, 세척실, 수면실, 수유시설 등과 별도 설치를 명확히 규정함.
- 청소 노동자, 건설노동자 등과 같은 업무의 경우 온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세면실, 세탁시설, 목욕시설 등이 휴게시설과 인접 거리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함.
- 휴게시설은 내화성이 있는 재료로 설치하도록 함.

4. 휴게시설 설치 실질화를 위한 방안 마련

1) 건설업 휴게시설 설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폭염시 그늘막 설치 등 사용이 가능
- 휴게실 설치 및 관리 운영 비용을 산안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과 연동하여 개선

2) 영세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산재예방기금으로 지원 및 관련 법령 개정

- 휴게실 설치 및 관리 비용에 대한 지원을 클린 사업의 내용으로 포괄하여 지원
- 영세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각종 공단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공단 관련 법에 공용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의무를 공단지원기구에 부여

3) 특수고용, 이동 노동자의 휴게실 설치를 위한 관련 법 개정과 예산 마련

-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배달, 운전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동일한 작업 조건인 검침, 도로보수, 운송, 배달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대상 적용이 안되고 있음.
- 동일 작업 조건으로 휴게실 이용이 불가능한 이동노동자, 방문 노동자에 대해서도 휴게실 설치를 지원하거나, 사업주와 협약을 맺어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기자회견문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의무 부여하는 휴게시설 관련 시행령
제정으로,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하라!**

사업주 휴게시설 설치 의무 관련 민주노총 요구 발표

매년 연이어 보도되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이면엔 참담한 휴게실 실태가 그림자처럼 존재한다. 비좁고 열악한 휴게실 실태의 문제는 이제 건강권의 문제를 넘어 인권의 문제이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올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도입되었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에 모든 현장의 휴식권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현장노동자들의 요구를 모아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휴게시설 설치 전 사업장 적용하라!

모든 노동자의 휴식권은 차등 적용될 수 없다. 고용 규모, 사업장 면적, 특정 업종 등 어떤 기준도 배제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 시행령안에서는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휴게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 법 개정 취지에 무색하게 가장 열악한 곳인 고용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장부터 배제될 것이다.

또한, 사무실과 같은 작업공간이 있더라도 예외 없이 별도의 휴게실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 면적이 작거나, 휴게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용휴게실을 설치하여 보완해야 한다.

둘째, 휴게실 최소 면적 1인당 2㎡ 보장하라!

허리도 펼 수 없는 좁은 휴게실 면적은 노동자들의 가장 절실한 개선요구이다. 휴게실이 있어도 사용 인원에 비해 턱없이 좁은 휴게실은 무용지물이다. 최소한의 공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체 최소 면적은 9㎡로, 2㎡ 이상의 1인당 단위면적 기준을 요구한다.

이 면적은 탈의실, 비품실, 수면실과 분리된 순수 휴게시설 면적이 되어야 한다. 청소, 야간 경비 및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경우 누워서 쉴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실효성 있는 공용휴게실 마련하라!

휴게실 자체가 없는 이동노동자들은 거점 창고에서 쉬거나, 계단 옆, 주차장에서 쉬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휴게실 설치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쉼터는 작업 동선과 맞지 않아 이용되지 않고 있다.

이동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위해 본사와 주요 거점장소에 휴게실을 기본으로 설치해야 한다. 추가로 공용휴게시설 마련에 사업주의 비용 책임을 명시하여 사업주와 정부, 지자체 간 협약에 의무가 공동으로 부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영세 사업장의 경우 추가로 정부의 예산 대책을 마련하여 사각지대 없이 설치해야 한다.

넷째, 휴게실 설치 노동조합과 합의 법에 명시하라!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의 조건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사업장 조건에 맞는 설치를 위해 현장 노동자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휴게실 이용을 위해 설치 개소, 장소, 운영 등 사업주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참여가 법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이번 산안법 개정은 하청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원청에게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콜센터와 같이 원청 사업장과 별도로 있는 사외 하청사업장에도 설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야 한다. 차별 없이 원청과 하청에 같은 조건의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하나 창고 등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온도와 환기 기준 역시 명시되어야 한다.

휴식권은 모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복지의 영역이 아니라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이다. 따라서 모든 일터에는 제대로 된 휴게실이 설치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과로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1년 12월 15일

휴게실 실태 현장 증언 및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